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1-2판) [인공신장실용]

(중앙방역대책본부·대한신장학회/대한투석협회, '20.2.27(목))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6판 (질병관리본부, '20.2.20 시행)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

1. 대상 :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

2. 목적

- 1)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'자가격리'에 제약이 따르고
 - 2) 면역력이 저하된 투석 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용이할 수 있어
-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여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상황에 투석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

3. 인공신장실 준비 사항

- 1)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도록 **교육**한다.
- 2) 보건용(수술용)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한다.
- 3)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위생(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) 등 **개인위생 수칙을 준수**한다.
- 4) 가급적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.

*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침대 간격을 유지 등

- 5) 대기실에서의 환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실을 폐쇄하고,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.
- 6) 예약시 환자에게 코로나19 발생국가 또는 지역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접촉력, 임상증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,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에 부합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,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 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문의한 후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.
- 7)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.

* 유증상자가 인공신장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
- 8) 체온이 37.5℃ 미만*이고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.

*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체온 이상인 경우도 발열로 간주할 수 있음

- 9)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2차감염을 예방한다.
- 10) 원칙적으로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에는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. 타 기관으로의 이송은 감염 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.

만일, 코로나19와 관련된 투석 환자가 불가피하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의료 기관은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 후 이송하며, 주치의는 이송 대상 병원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한다.

4. 의사환자 발생시 대응 방법

- 1) 의사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연락하고 의사환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이송 전까지 임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에 격리한다.
- 2)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협의하여 이송계획을

수립하고,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한다.

- 3)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송수단(보건소 구급차, 응급의료기관 구급차, 119구급차 등)을 결정하고 이송 조치한다.

* 의사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

- 4) 만일 격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치료 실시한다.

*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로 투석장비를 이동하여 혈액투석을 시행

- 5)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,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한다.

5. 조사 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방법

- 1)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인공신장실에 내원하지 말고,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연락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.

- 2)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확보하여 이동시킨다.

- 3)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(PCR)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급적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다.

- 4)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투석을 시행하되, 다른 환자와 별도의 시간에 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투석을 시행한다.

- 5) 진단검사에서 24시간 간격 2회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호전되면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.

6. 접촉자 발생시 대응 방법

- 1) 확진환자 혹은 의사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무증상자의 경우,

- 매일 체온을 측정하여 37.5°C 미만이고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, 해당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투석 또는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하거나,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.

* 코호트 격리 투석이란 다른 환자의 투석치료가 끝난 뒤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접촉자들이 함께 시행하는 투석치료를 의미함

2) 인공신장실 방문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경우,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,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로 연락하여 신고한다.

3) 인공신장실 내부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한다.

* 감염예방 표준주의 준수

※ 참고사항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안내사항」 준수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절차 (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용) (6판)」 준수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(지자체용) (6판)」 준수

【붙임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

□ 사례 정의

○ 확진환자(Confirmed case)

-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- 진단검사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
○ 의사환자(Suspected case)

- 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

○ 조사 대상 유증상자

-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가능
-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6판)(지자체용) 2020.2.20 개정시 내용 변경

<신고 대상>

1.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2.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3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4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
5.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* 방문 +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6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
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